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9. 30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, 제12조제4항, 제29조제4항, 행정절차법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송달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지○원	99. 5. 3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유예 기간 만료 후 연락두절 및 지정 상담일자 미방문 (출석통지 2회 이상 불응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중단) 및 향후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샘마을길 4-16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9. 30. ~ 2026. 10. 14.(15일간)

5. 기타 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박재현(Tel. 031-231-786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